##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16호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최초 부과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0178190004530002319	㈜투비소프트	735-87-001** 110111-57633**	10,0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506)
-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